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6575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인천지방법원 2020. 8. 13 선고 2019나65750 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김포시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230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호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주

담당변호사 성기배

변론 종결2020. 7. 2.

판결 선고2020. 8. 13.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9. 8. 14. 선고 2019가소2306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입금해주면 C회사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미수금을 지급받는 대로 위 2,5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겠다고 약정(이하 '원고 주장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를 믿고 피고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는 C회사의 D, E을 상대로 위 1억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미수금을 모두 변제받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2,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1. 29. 피고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4.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 보더라도 위와 같이 계좌이체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 주장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위와 같은 약정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김종민

판사임정택

판사윤재남